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내무위원회

1993. 8. 6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7월 30일

· 회부일자 : 1993년 7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1993. 8. 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 영 창)

가. 제안이유

대전엑스포 '93 참가를 위하여 외국참가자가 일시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 본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

나.주요골자

ㅇ 면제대상

- 대전엑스포'93 참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등 외국 참가자가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

ㅇ 면제세목 : 취득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 태 무)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등의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대전 엑스포'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 자동차와 정부대표 및 운용요원등의 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한시적 조례의 성격으로 외국참가자가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대전 엑스포'93의 성공적 개최와 본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